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1

2022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 2022년 8월 29일

다. 회부일: 2022년 9월 2일

라. 상 정 일 :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0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특별시 NPO지원센터를 2014년 10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11월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탁기간(3회차)이 종료함에 따라 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업무까지 확장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운영 필요
 - 다양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

 □ 직접 운영 보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 필요
- 다. 위탁사무 내용(위탁 대상 사무, 범위 등)
 - 1) 사업목적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
 - 2) 위탁사무 내용
 - 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②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 ③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④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5)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⑥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⑦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⑧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 ⑨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명 칭:「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 개관시기 : 2014년 10월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시설규모 : 전용 867.4m²

- 1층: 열린 공간(310m², 약93평) ⇒ 대강당, 전시공간 등

- 2층: 사무 공간(557m², 약169평) ⇒ 협업공간, 회의실, 사무실, 교육장 등 〈 위치도 〉



- 마.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22. 11. 15. ~ 2025. 11. 14.)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2년 소요예산 : 1.555백만원
 - 민간위탁금 1,555백만원(인건비 823, 운영비 403, 일반관리비 20, 사업비 309)
- 아. '22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22조(센터의 위탁)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 사항 없음.
- 라.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NPO지원센터) 보고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1)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서울시는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 제정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개소(2014.10.)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서울시는 동 센터의 위탁기간(3회차)이 만료(2022.11.14.)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정한 명칭(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행정국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사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 없이 조례의 명칭과 다른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임의명칭으로 변경하여 신규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u>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u>, <u>제</u> <u>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u>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quot;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u>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u>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전)
 - 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u>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 제22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동 사업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대표발의)」)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은 회기(제314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되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2022.9.28.)되어 10월 17일 시행되었는바, 센터의 명칭과 기능 불일치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1)」

• 제안이유

-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위원회 운영방식 효율화 및 당연직 위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심의·자문으로 조정(안 제13조제1항~제4항)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관련 부서장 자료제출·출석 등 요구를 협조 요청으로 완화(안 제13조제4항)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정기회 개최횟수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안 제16조제3항)
-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안 제 22조제3항, 제24조)
- NPO지원센터 명칭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안 제20조, 제21조)
- 당연직 위원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현행화(안 제14조제2항)
- 본 동의안은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단체와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서울특별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간위탁 개요 〉

ㅇ 위탁사업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o 위 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o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 ㅇ 위탁사무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o 위탁기간: 3년(2022.11.15.~2025.11.14.)

o 위탁금액: 1.555백만원(2022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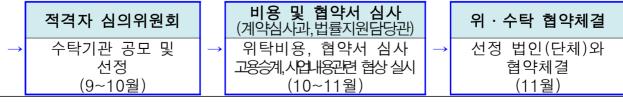
ㅇ 선정방법 :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 심사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ㅇ 추진절차

민가위탁 민간위탁운영 일상감사 의뢰 시의회 동의 추진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위탁사무 내용비용. 시행 사무 상임위 및 위탁 공고의 적정성 심의 수탁자 선정방법 등 본회의 통과 적법 : 타당성 점검 (7월) (9월) (6월) (8월)



○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사단법인 시민'이 민간위탁받아 운영해왔으며, 민간위탁 협약 만료 예정(2022.11.14.)에 따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사실상 신규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

ㅇ 시설현황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867.4㎡)

- 건물소유 : 서울시(부릮빌딩 1.2층)

※ '14년 제35지구(하나은행 본점) 사업시행시, 하나은행이 부림빌딩 1·2층 매입하여 市에 기부채납용도/면적: 업무시설/市소유 면적 1,816.92㎡(전용면적 867.4㎡)

ㅇ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주요기능 : 시민공익활동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위탁현황: '사단법인 시민' (대표: 양혁승)이 수탁 운영

- 위탁기간 : 2019.11.15. ~ 2022.11.14. (3년)

구 분	1회차 (3년)	2회차 (3년)	3회차 (3년)	
수탁기간	′13.11.15.~′16.11.14.	′16.11.15.~′19.11.14.	′19.11.15.~′22.11.14.	
수탁법인 (사) 시민		(사) 시민	(사) 시민	
선정방법	공 모	재계약	재위탁(공모)	

- 예산 및 인력 : 1.555백만원 / 17명 * 7~8월분 교부금 지급 완료(매 2개월 분교부)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정원
2022	1,555	823	403	309	20	17명

ㅇ 추진경위

- (가칭)서울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 : '12.11. 7.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3. 7.14.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협약 체결 : '13.11.15.

- 서울시 NPO지원센터 개소 : '14.10. 1.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 '16.11.15.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 '19.6.28.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 '19.11.14.

〈 수탁기관(사단법인 시민) 현황 〉

< (사) 시민 운영 현황 >

- ▶ 설립목적 :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사업
- ▶ 법인 설립('13.2.26.) / 서울시 NPO지원센터 수탁('13.11월)

구 분	1회차(3년)	2회차(3년)	3회차(3년)	
수탁기간	′13.11.15.~′16.11.14.	′16.11.15.~′19.11.14.	′19.11.15.~′22.11.14.	
수탁법인	(사) 시민	(사) 시민	(사) 시민	
선정방법	공 모	재계약	재위탁(공모)	

ㅇ 수탁기관 현황

- 1. 이사장 : 양혁승(임기 : '20. 3. 28. ~ 현재)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前경실련 정책위원장, 前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역대 이사장 현황 〉 ---

• 권미혁('13.2.26. ~ '15.10.1.) : 20대 국회의원

前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정현백(15.10.1. ~ '17.6.12.) : 前 여성가족부장관('17.~'18.), 前 참여연대 공동대표

■ 임현진(17.7.13. ~ '20.3.27.) : 현 국무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前 경실련 공동대표

- 2. 설립목적: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사업
- 3. 주요사업
 - 활동가역량강화, 시민펠로우 사업(비영리공익활동가 경험공유, 시상)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및 정책포럼 개최 등
 - 시민사회와 각계와의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4. 법인연혁

연도	주요 내용
′13.2.26.	사단법인 시민 창립
′13.6.13.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3.11.~현재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수탁
2016	2기 시민펠로우 현장운동시리즈, 시민 공익자료발간시리즈 발간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수탁 재계약 2016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성과 공유대회
2017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간담회/ 민주시민교육포럼 개최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국무총리실)
2018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활성화 세미나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컨설팅/네트워킹)
2019	NPO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위탁운영(청년재단)
2020	- 법제도 개선활동 : 공시제도, 의사록인증 제도 등 시민사회 관련 법안 설명화토론회 - 강한시민사회포럼 - 강한시민사회포금 - 연구활동 : 재난위기극복을 위한시민사회역할과 민만합복방안 / 시민사회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 역량강화교육 : 공익법인 회계실무, 비영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대면 역량강화 등 - 연대협력활동 : 시민사회활성화전국세트워크, 공익세트워크 우리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등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행정국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역할 중 시민체감 가시적 성과 부재, 일반시민 참여 컨텐츠 부족, NPO센터 간 업무 중복 및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 시민의 실질적 공익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 센터'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운영이 필요하고, 다양한 민간단체와 공익활동가 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2022.7.) 〉

□ 문 제 점

- ㅇ 자율에 기반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공공 예산지원 적정성 비판 지속
 - 지난 10년간 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체감 가시적 성과 부재
- o NPO 지원, 네트워킹 시업 중심 운영으로 일반시민 참여 확대 목적에 미흡
 - 일반시민 참여 **컨텐츠 부족**, 시민공감적 **사회문제 해결·변화 사례 부족**
- o NPO지원센터 확장에만 치중, 센터 간 업무 중복 및 차별성 부족
 - 광역·권역 NPO지원센터 모두 NPO 활동 지원, 네트워킹 사업 위주 운영
- ㅇ 센터에서 민간보조시업 운영, 상호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도적적 해이 발생
 - 민가위탁금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수의 공모사업 진행

□ 개선방안

-<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선 방향 >-

- ◈ 일반시민 참여 확대 위해 센터 명칭 변경[(가칭)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
- ◈ 센터 간 업무 중복성 해소 위해 권역별 센터 종료 → 광역-권역 기능 통합
- ◈ 공공예산 지원 최소화, 자체 사업발굴·경영 개선으로 자생력 강화
- ◆ 다양한 자원(법률노무홍보네트워크)을 연계하여 시민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 회복

o 서울시 NPO지원센터 11월 위탁 종료 ⇨ 신규 민간위탁 공모 추진

- (사)시민이 '13.11월 최초 수탁 이후 현재까지 장기 수탁하고 있으며, 사업 독점,
 특정 시민단체 특혜 및 관리 부실 등 논란
- 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업무까지 포괄 재편하여 (신규)민간위탁 추진
- 협의적 개념인 'NPO' 라는 용어 대신, 시민 접근성 및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센터 명칭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 추진
- 기존 NPO뿐만 아니라 제3섹터 내 NGO까지 지원토록 센터 사업 확장
- ※ 조례 개정시 센터 명칭 변경 및 권역별 센터 근거 조항 삭제. 센터 기능 수정
- 청년 · 1인 가구 · 성폭력 · 주택 · 교육 · 사회적 취약계층 등 市 역점사업 관련 시민공익
 활동 단체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센터 역점 사업 변화 모색
- 신규 법인 위탁시 지원 예산을 타 민간위탁 기관과 비교 및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인건비·운영비 등 합리화 도모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관주도의 직영방식보다 중립적 성향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역 단위 공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성과 평가 결과는 81.86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2016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2점으로 재계약 자격 충족하여 3년 재계약
 - 2019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5점으로 재위탁 자격 충족하여 3년 재위탁
 - 2021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1.86점

평가범주	사업 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시민 만족도	합계
 배점	24	15	38	8	15	100
득점	16.02	11.8	33.5	7	13.54	81.86

○ 주요 사업성과

- ('13~'16) NPO조직운영 역량강화, 미트쉐어, 활동가 역량강화, 공간지원 등
- ('16~'19) NPO조직변화 지원, 국제컨퍼런스, 파트너페어, 정책연구 등
- ('19~'21) 조직변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환경조성,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원연계 및 정보확산 등
- 다만,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내용 수정에 따른 다른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위탁기간 내 추진 가능 여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본 동의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사무 내용 중 비영리민간 단체인 'NPO'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등 일체의 활동 지원 내용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는바, 지난 9년간 센터가 지속해서 운영되어온 만큼 사무 내용의 종료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 등의 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위탁사무 내용 비교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공연활동자원센터의 시유재사 및 물품관리 - 센터의 시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공약 활성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회를 위한 장소와 시설 제공 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역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약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안재육성 - 시민공약활동에 관한 상탁 컨설팅 - 시민공약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 비영민조직(N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로체계 구축 -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약활동에 관한 조사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 시민공약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시민공약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작제공 - 권역별시민공약활동관련 특화시업 - 그 밖에 시민공약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 그 밖에 시민공약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업 인정되는 시업

○ 한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위탁 사무 내용으로 추가된 '권역별 시민 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남권NPO 지원센터(2023년 3월 종료 예정)'의 사무내용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현황 >

◆ 광역 센터 1개, 권역별 센터 3개

구 분	광 역(1개소)	권 역(3개소)					
一 正	서울시NPO지원센터	동북권NPO지원센터	동남권NPO지원센터	서남권NPO지원센터			
수탁법인	(사) 시민	(사)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사) 커뮤니티허브공감	(사) 구로공익단체협의회			
수탁기간	'19.11.15 ~'22.11.14 .	'18.6.15. ~'22.6.14.	'20.3.5.~ '23.3.4.	'21.3.1.~ '24.2.28.			
인력 (정원)	17명	5명	5명	5명			
'22년예산	1,555백만원	297백만원	450백만원	432백만원			
종료현황	'22.11월 신규 위탁추진	'22.6월 종료 완료	'23.3월 종료 예정	'22.11월 종료 예정*			

※ 서남권 센터는 '24. 2월 종료 예정이나 수탁기관에서 조기 협약해지 협의 요청('22. 3)

〈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위탁사무 내용 〉

- ①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 ②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컨설팅
- ③ 동남권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④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5)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⑦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둘째, 행정국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민간위탁기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로 적시하며 구체적인 기간을 '2022.11.15.~2025.11.14.'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민간위탁 개요 〉

- 3. 주요 내용
 - 마.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22.11.15. ~ 2025.11.14.)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2년 소요예산 : 1,555백만원
- 현재 체결되어있는 민간위탁(사단법인 시민)협약의 만료일이 2022년 11월 14일 인데 반해, 새로운 위탁계약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2)에 따라 40일간 입찰공고 후 적격자 심의(10~20일 소요)를 마치고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마치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 시민들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동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책임이 있는 행정국의 불성실한 행정행위로 혼란을 초래한 것은 이닌지 소관 실국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행정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연장협약(2~3개월)을 추진할 계획임.
- 셋째,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2.7.21.) 결과를 살펴보면, 위탁사무 내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위탁 절차를 준수할 것과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국은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¹⁾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 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비고
갈등관리 협치과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공모)	시설		3년	적정	- 위탁사무 내용상 주요 사항의 변경이 수반되었으므로 민간위탁 지침에 의거 신규위탁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부시장 전결) 수립 필요 -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조례 개정 시 위탁사무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반영

- 넷째,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서울특별시 민간 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고용유지 및 승계, 정규직 비율 등 노동형태,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의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관련 지침에 따라 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8.) 〉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 발생
- '특별한 사정'의 예시
-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관계부처 합동)에서 명시한 사유
 -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예: 민간대체인력 뱅크,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예: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 ②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③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 적용
- '승계범위 조정'의 예시
- ①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예산변경 등 포함), 분리,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 ②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 ③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고용승계 범위**조정 가능
- * 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시): 10명 미만 /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예시): 25%~80%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1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1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2014년 10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2022년 11월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탁기간(3회차)이 종료함에 따라 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업무까지 확장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센터의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운영 필요
 - 다양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

 □ 직접 운영 보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 필요
- 다. 위탁사무 내용(위탁 대상 사무, 범위 등)
 - 1) 사업목적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
 - 2) 위탁사무 내용
 - 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②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③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 · 훈련 등 인재육성
 - ④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⑤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⑥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⑦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⑧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 ⑨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명 칭:「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 개관시기 : 2014년 10월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시설규모 : 전용 867.4m²
 - 1층: 열린 공간(310m², 약93평) ⇒ 대강당, 전시공간 등
 - 2층 : 사무 공간(557m², 약169평) ⇒ 협업공간, 회의실, 사무실, 교육장 등 〈 위치도 〉



마.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22.11.15. ~ 2025.11.14.)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2년 소요예산 : 1,555백만원
- 민간위탁금 1,555백만원(인건비 823, 운영비 403, 일반관리비 20, 사업비 309)
- 아. '22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22조(센터의 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NPO지원센터) 보고서」

※ 작성자 : 시민협력과 시민협력정책팀 권미영(☎2133-6307)